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4회 제2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19. 12. 9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제출자 : 구청장

○ 제안일 : 2019. 11. 15

○ 회부일 : 2019. 11. 18. (의안번호 : 19 - 137)

2. 제안이유

○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민상의 명칭을 삭제하고 관련 부문으로 조문을 개정하고, 일부 표창 서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구민상의 시상 7개 부문 분류된 내용을 삭제하고 구민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는 규정(조례 제9조제3항)에 따라 구민상의 시상 부문은 규칙에 의해 명칭 등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(안 제9조제2항)

○ 일부 표창장 서식 변경(안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6호)

○ 기타 표현 정비

4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상 규칙」

5. 검토보고

○ 본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민상의 명칭을 삭제하고 관련 부문으로 조문을 개정하고, 일부 표창 서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(안 제9조제2항)구민상의 시상 7개 부문으로 분류된 내용을 삭제하고 구민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는 규정(조례 제9조제3항)에 따라 구민상의 시상 부문은 규칙에 의해 명칭 등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, (안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6호) 일부 표창장 서식변경 및 기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안은 구민상의 시상 부문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상 규칙」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과 한자어 표현 및 마포구 표창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권리와 공익을 저해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4회 제2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19. 12. 9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제출자 : 구청장

○ 제안일 : 2019. 11. 15

○ 회부일 : 2019. 11. 18. (의안번호 : 19 - 154)

2. 제안이유

○ 향후 구와 북한의 주민간의 남북 간 왕래시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·전문적 추진을 위한 (가칭)「남북교류협력진흥센터」의 설치·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‘구와 북한의 주민간의 남북 간 왕래시 필요한 비용의 지원’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(안 제4조제2호)

○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·전문적 추진을 위한 (가칭)「남북교류협력진흥센터」의 설치·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8조, 안 제19조)

○ 기타 성별영향평가 검토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(안 제10조제1항)

4. 관계법령

○ 「남북협력기금법」

5. 검토보고

○ 본 조례안은 향후 구와 북한의 주민간의 남북 간 왕래시 필요한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·전문적 추진을 위한 (가칭)「남북교류협력진흥센터」의 설치·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(안 제4조제2호) '구와 북한의 주민간의 남북 간 왕래시 필요한 비용의 지원'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
- (안 제18조, 제19조)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·전문적 추진을 위한 (가칭)「남북교류협력진흥센터」의 설치·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신설
- (안 제10조제1항) 기타 성별영향평가 검토사항을 반영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올해 남북정상회담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,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,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지방정부간 교류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,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분위기를 감안해 볼 때 예산이 수반되는 남북교류협력진흥센터를 설치·운용하는 것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개정안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음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4회 제2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19. 12. 9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제출자 : 구청장

○ 제안일 : 2019. 11. 15

○ 회부일 : 2019. 11. 18. (의안번호 : 19 - 155)

2. 제안이유

○ 도시 간 교류협력과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」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한 대외협력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 적용대상을 ‘국외 도시’에서 ‘국내외 도시’로 확대

○ 대외교류와 관련한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‘정의’ 조항 신설(안 제2조)

○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)

4. 관계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5. 검토보고

○ 본 개정안은 도시 간 교류협력과 자매결연 등에 관한 규정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」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한 대외협력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조례 적용대상을 ‘국외 도시’에서 ‘국내외 도시’로 확대하고, (안 제2조)대외교류와 관련한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‘정의’ 조항 신설, (안 제9조)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안은 구와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